2012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특별 정책심포지엄

금융감독체계 개편, 어떻게 할 것인가?

2012년 6월 8일

윤석헌 고동원 빈기범 양채열 원승연 전성인 (숭실대)(성균관대)(명지대) (전남대) (명지대) (홍익대)

- 1. 문제의 제기
- 2.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약사 및 개요
- 3. 해외 사례
- 4. 보고서 구성

1. 문제의 제기

- ❖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실패로 저축은행 사태 초래
 - 2011.5~9월 금융감독 혁신 TF가 구성되어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등 소프트 웨어 개선 방안 제시
- ❖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선진국들은 시스템리스크 예방 및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감독체계 대폭 개편 중
- ❖ 우리나라는 1998년 통합감독체계 출범 이후 문제점 계속 노출
- ❖ 금융산업 선진화를 위해서도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과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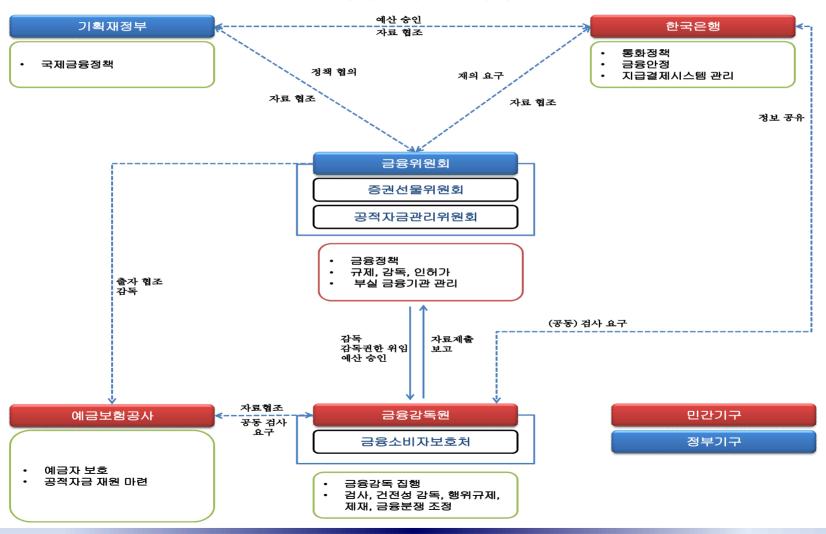
2.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약사 및 개요

❖ 개편의 약사

- 1997.12월 제정된「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998.4월 금융감독위원회와 1999.1월 금융감독원 출범
- 2000년 말 진승현·정현준 게이트 발생 이후 기획예산처 주도로 금융감독 혁신방안 마련: 민관합동의 단일 감독기구를 제안했으나 미채택
- 2003년 카드사태 이후 감사원의 금감원 감사 사후 조치로 2004.8월 정부혁신 위원회가 소프트웨어 중심의 개편 방안 제시
- 2008.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는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감위를 통합하여 금융위원회를 설치하고, 금융감독원과의 수장 겸직을 분리
- 2011.8월 한은법 개정으로 한은 목적조항에 "금융안정에 유의" 책임 부여

한국금융학회 KMFA 3/62

한국의 금융감독체계



3. 해외 사례

- ❖ 해외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배경
 - 글로벌 금융위기로 기존 금융감독체계의 시스템위기 대응 능력 한계 노정
 - 금융감독기관간 업무 조정 실패
 - 거시건전성 감독 및 금융소비지 보호 미흡

한국금융학회 KMFA 5/62

❖ 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국제적 추세

-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 기능을 제도적으로 분리하는 쌍봉형 금융감독체계로 개편
 - 미국: 시스템위기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FSOC, CFPB 신설
 - 영국: 통합감독기구(FSA)를 건전성 감독기구인 PRA와 행위규제 및 소비자보호 기 구인 FCA로 분리하는 내부 쌍봉형 감독체계 개편 추진 중
 - 뉴질랜드: 2011년 쌍봉형 감독체계로 전환
 - 프랑스: 2010년 사실상의 쌍봉형 감독체계로 전환
 - 호주: 1997년 월리스 보고서에 의거 쌍봉형 감독체계 채택

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국제적 추세

한국금융학회 KMFA 6/62

주요국 금융감독체계의 변화 개요

국가	2008년 현황	최근 개편 움직임
미국	• 기능별·기관별 중복 감독체계 •	금융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 CFPB 설립 거시건전성 정책 조정 기구 FSOC 설립
영국	• 통합감독기구 FSA •	쌍봉형 체계로 전환 (FSA를 PRA와 FCA로 분리) BOE가 미시·거시건전성 감독 모두 담당
독일	• BaFin에 의한 통합 감독 • 분데스방크도 은행 감독	은행 감독권을 분데스방크로 집중 예정
프랑스	• 기능별·기관별 감독체계 •	건전성감독기구 ACP의 통합 설립 ACP와 AMF로 구성된 사실상 쌍봉형 체계
호주	 쌍봉형 감독체계 (APRA와 ASIC로 구성) 	불변
뉴질랜드	• 기능별·기관별 감독체계 •	쌍봉형 체계로 전환 (RBNZ와 FMA로 구성)
스위스	• 기능별·기관별 감독체계 •	통합감독기구 FINMA 설립
캐나다	은행, 보험 감독기구 통합 (OSFI)FCAC는 소비자 보호	불변
일본	• 통합감독기구체계 •	불변

한국금융학회 KMFA 7/62

4. 보고서의 구성

장	내용
II장	금융감독체계 개편의 기본 방향으로 쌍봉형 제시
III장	금융건전성감독원 신설
IV장	금융시장감독원 분리 설립
V장	감독기구 운영 혁신 방안
VI장	금융감독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구축
VII장	결론

한국금융학회 KMFA 8/62

1.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방향

2. 대안의 제시

3. 평가 및 선택

1. 금융감독체계의 문제점과 개편 방향

❖ 문제점

- 금융정책이 금융감독을 압도
- 금융감독의 정책 업무와 집행 업무가 분리됨에 따른 비효율
- 국제금융정책과 국내금융정책의 분리
-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

❖ 문제점 (계속)

- 취약한 시장규제 기능
- 거시건전성 정책체계의 미비
- 감독기구의 규제·감독 독점
- 감독유관기관간 불필요한 경쟁과 책임 회피
- 감독유관기관간 감독정보 공유 미흡으로 감독 비효율 발생
- 감독기구 내부 통제장치 미작동

❖ 개편 방향

- 금융의 정책업무와 감독업무 분리로 감독기구의 독립성 확립
- 쌍봉형 감독체계 도입으로 행위규제 및 소비자 보호 기능 강화
- 시장규제 강화로 금융시장 신뢰 회복 및 금융시장 발전 도모
- 금융안정위원회 신설로 감독유관기관간 정책 공조 및 협력체계 구축

한국금융학회 KMFA 12/62

2. 대안의 제시

- ❖ 개편대안의 개요
 - 감독기구로 하여금 감독의 정책 및 집행 기능을 모두 보유토록 함
 - 기획재정부는 국내금융정책과 국제금융정책을 통합 관장
 - 건전성감독 기능과 행위규제 기능으로 구분하여 쌍봉형 체계 채택

한국금융학회 KMFA 13/62

❖ 두 가지 쌍봉형 대안 검토

항 목		대안 1	대안 2	
	구성	• 현재 감독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행위규제 감독기구로 분리 설치		
내 비시선선성 (한은과 감독		 독립된 감독기구의 지위 유지 (한은과 감독기구 간 현행 분리체제 유지) 	• 한은으로 건전성 감독 기구 이관	
	거시건전성 감독	• 금융안정위원회(가칭) 법제화		
비고	장점	금융감독의 독점 타파시장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	거시건전성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시장규제 및 소비자보호 강화에 기여	
	단점	• 금융기관 수검부담 증가	통화정책과 금융안정 목적간 상충 가능성중앙은행 권한 집중	

한국금융학회 KMFA 14/62

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 간 업무분담

	금융건전성감독원	금융시장감독원
감독 범위	자기자본규제, 자산건전성, 유동성 규제 등	금융거래, 시장규제, 공시 및 정보제공, 소비자신용 등
	유형 1 금융기관 SIFI인 유형 2 금융기관	유형 2 금융기관 (단, SIFI 제외)
인가 및 허가	유형 1 금융기관	유형 2 금융기관
	유형 1 금융기관 SIFI인 유형 2 금융기관	유형 2 금융기관 (단, SIFI 제외)

❖ 두 감독기구 간 협력체계 마련

호주 APRA와 ASIC 간 양해각서 상의 업무 구분

기구	업 무	
APRA	 은행, 건설조합, 신협, 생명 및 일반보험사, 동우회, 퇴직연금기금 및 관련 신탁에 대한 건전성 감독(인허가 포함) 금융보상제도(Financial Compensation Scheme)의 관리 ASIC을 위하여, 일반 보험상품 취급 금융회사들로부터 자료수집 	
ASIC	 회사법과 금융서비스법의 모니터링, 규제 및 집행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·신탁회사를 포함하는 지급시스템 무흠결성 소비자 보호기능 제고 신용공여자 및 중개기관에 대한 인허가 및 행위규제를 포함하는 전국 소비자신용기구 관리 책임 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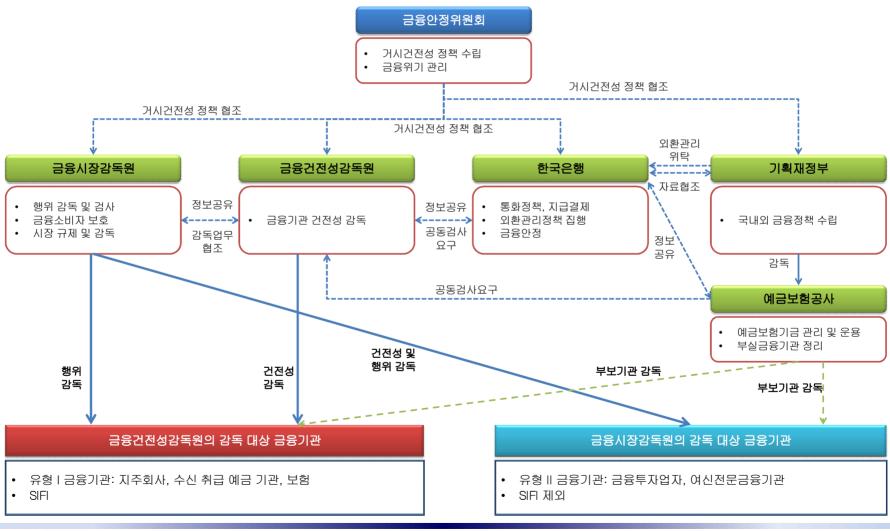
3. 평가 및 선택

금융감독체계 대안의 평가

평가기준	대안 1	대안 2	금융위 추진안
시장의 신뢰 확보	0	Δ	Δ
미시건전성 감독 정상화	0	Δ	×
금융소비자 보호	0	0	Δ
시스템리스크 통제	Δ	0	×
감독 기능의 균형	0	×	×
감독 사각지대의 해소	0	Δ	×
개편의 현실적 수용성	0	×	0

❖ 결론: [대안 1]을 선택

금융감독체계 개편안 개념도



1. 현황

2. 금융건전성감독원 신설

1. 현황

- ❖ 금융감독기구의 이원적 체제
 - 금융위원회: 금융정책 및 감독정책 업무 모두 수행
 - 증권선물위원회: 자본시장 규제 업무(회계감리 업무 포함)
 - 금융감독원: 금융감독 집행 업무(검사 업무)

한국금융학회 KMFA 20/62

- 2. 금융건전성감독원 신설
- ❖ 쌍봉형 체계로 전환
- ❖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
- ❖ 미시건전성 감독업무 수행
- ❖ 조직

❖ 쌍봉형 체계로 전환

- 현행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을 건전성 감독 업무를 담당하는 '금융 건전성감독원'(가칭)과 영업 행위 규제 및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'금 융시장감독원'(가칭)으로 이분하는 쌍봉형(Twin Peaks) 체계로 전환
- 신설하는 '금융건전성감독원'은 미시 건전성 감독(micro-prudential regulation) 업무(외환 건전성 감독 업무 포함)에 주력

한국금융학회 KMFA 22/62

❖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

- 신설 금융건전성감독원을 공적 민간기구(무자본 특수법인)로 설립
- 주요 선진국은 공적 민간기구 형태의 금융감독기구 유지
 - 호주(APRA), 영국(FSA) 등
 - 미국은 연방정부로부터 독립된 공적 기구 형태 (FRB, SEC, FDIC 등)
- 공적 민간기구의 장점
 - 금융감독의 독립성 확보
 - 재원(財源) 확보의 용이성
 - 금융감독의 전문성 확보
 - 시장친화적인 금융감독 추구

❖ 공적 민간기구가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?

- 위헌이라는 주장
 - 행정권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, 그 외 기관이나 단체가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주장
- 위헌이 아니라는 주장
 - 헌법 제66조 제4항에서의 "행정권"이란 중앙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지방행정기관 나아가 '국가간접행정기관'까지 포함하므로, 국가간접행정기관인 영조물법인(營造物法人)이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 아님
 - 강현호(2003), 윤석헌·김대식·김용재(2005), 이원우(2006), 김상겸(2003)
- 결론
 - 무자본 특수법인인 금융감독기구는 공공단체인 "공법상의 영조물법인"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금융감독기구가 금융감독 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헌법 에 위반되지 않음

- ❖ 공적 민간기구가 제재 조치 등 행정 처분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가?
 - 현행 법령은 반드시 행정기관만이 행정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 는 않음
 - "행정청"의 범위: "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기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의하여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(私人)" (「행정절차법」제2조 제1호)
 -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기구는 공법상의 영조물법인(營造物法人)으로서 공공단체 내지 공공기관으로 볼 수 있으므로 관련 법적 근거에 의하여 위임 을 받으면 행정청의 범위에 포함
 - 결론
 - 설치 근거법에 명시적으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만 둔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임

❖ 업무

● 금융기관의 경영 활동 및 재무 활동의 건전성과 관련한 감독·검사 및 제 재 업무를 수행하고, 금융기관 설립 인허가 등의 업무를 수행

금융건전성감독원의 업무

	업무			
	• 금융기관의 영업 및 재무 활동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 및 검사			
미시건전성 감독 업무	• 감독·검사 대상 금융기관 - 유형 1 금융기관 - SIFI로 지정된 유형 2 금융기관			
	• 금융기관에 대한 인·허가 및 제재 조치권			
	• 금융감독 관련 조사·연구 기능			
감독 관련	• 기획재정부에 대한 법령 제·개정 제안권			
법규에 관한	• 기획재정부의 금융 관련 법령 제·개정에 대한 협의권			
업무	• 감독규정 제·개정권			

❖ 조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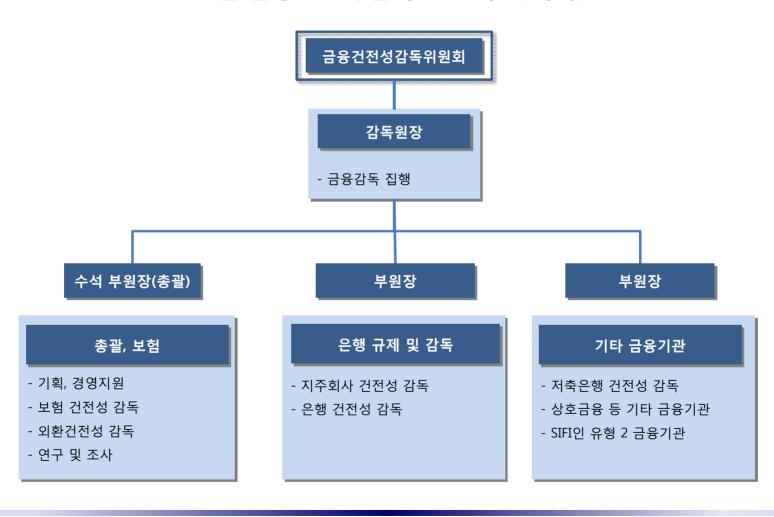
- 금융건전성감독원의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로 합의제 의결 기구인 '금 융건전성감독위원회' 설치
- 금융건전성감독위원회는 총 7인의 위원으로 구성
 - 상임위원(3인): 원장, 수석부원장 및 상임감사위원
 - 비상임위원(4인): 국회가 추천하여 대통령이 임명
 - 임기: 3년, 1회에 한하여 연임 허용 (단 상임감사위원 제외)

● 집행임원

- 원장(감독위 의장 겸임):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
- 수석부원장: 대통령 임명
- 부원장(2인 이내): 원장 임명, 임기 2년, 연임 허용
- 상임감사위원: 국회가 금융전문가 중 추천하여 대통령 임명, 연임 불허

한국금융학회 KMFA 27/62

신설 금융건전성감독원 조직도(예시)



한국금융학회 KMFA 28/62

1. 현황

2. 금융시장감독원 분리 신설

1. 현황

- ❖ 현행 금감원은 건전성 감독과 행위규제·금융소비자 보호 기 능을 모두 수행
 -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미흡
- ❖ 시장규제는 금융위 산하의 증권선물위원회(증선위) 담당
- ❖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사후 구제 기능은 금감원 산하 금융 소비자보호처와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

2. 금융시장감독원 분리 신설

❖ 설립목적

- 금융시장의 유효 경쟁 유지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통하여
- 금융시장의 신뢰를 유지하고 금융시스템 안정적 발전에 기여

❖ 감독범위

● 소매시장, 도매시장 및 금융시장 구조 관련 사안

❖ 지위 및 조직 구조

- 금융건전성감독원과 동등한 지위의 공적 민간기구
- 내부 최고의결기구로 금융시장감독위원회를 설치
- 사후 구제기구 설립하여 민원 및 금융분쟁 조정, 금융소비자 교육 담당

❖ 감독기구의 법적 형태

● 금융시장감독원은 공적 민간기구로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나, 정부 조 직으로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

감독기구 법적 형태별 장단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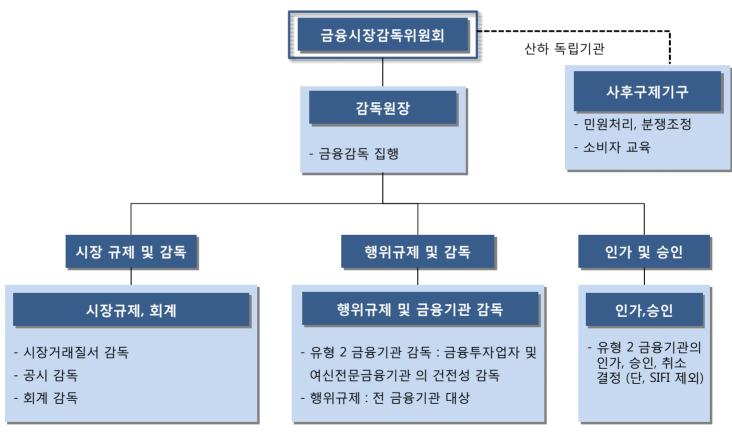
	공적 민간기구화 방안	정부 조직화 방안
장 점	독립성, 중립성 확보전문 인력 확보 용이재원확보 용이	강력한 감독 행정 집행력 가능정부 부처의 업무 협조 용이
단 점	강한 집행력 확보 어려움정부의 협조 부족 가능성	전문 인력 확보의 어려움독립성 확보가 어려움

❖ 업무 개요

- 행위규제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감독·검사 업무
 - 시장 규제 (현행 증선위 소관 업무 이관)
 - 금융범죄 조사 기능
- 유형 2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, 인허가 및 제재
- 산하 사후구제기구가 민원 처리, 금융분쟁조정, 금융소비자 교육 담당
- 금융소비자 및 시장에 대한 조사 및 연구
- 금융감독 관련 법규에 관한 업무
 - 기재부에 대한 법령 제·개정 제안권 및 협의권, 감독 규정 제·개정권

❖ 조직

신설 금융시장감독원 조직도 (예시)



※ 분쟁조정기구(ADR) 분리 설치

V. 금융감독기구 운영 혁신 방안

- 1. 문제의 제기
- 2. 운영의 혁신 방안
- 3. 예산 합리화 방안

1. 문제의 제기

- ❖ 현행 금융감독 운영의 문제점
 - 정치권 및 산업포획의 문제
 - 전문성과 권한 부족으로 효과적인 감독업무 수행의 어려움
 - 검사의 투명성 부족
- ❖ 규제감독자를 사익 추구자로 간주하는 사적 이익 관점에 근거 한 금융감독기구 운영 방안의 혁신 필요
- ❖ 독립성, 전문성, 책임성, 투명성 확보가 관건
 - 감독자의 전문가 정신(professionalism) 확립 필요

2. 운영의 혁신 방안

- ❖ 독립성 강화
 - 금융감독기구 임직원의 신분보장
 - 법으로 임기 보장
 - 무작위성이 보장된 부정기·불시 검사
 - 검사대상 선택과 검사자 배치에 자의성 배제토록 무작위 방식 도입
 - 예: 경찰의 과속단속카메라 도입에 의한 비리 방지 벤치 마크
 - 검사종합관리시스템 완성
 - 규제자의 투명성 증진을 위하여 검사의 전과정을 실시간 입력·모니터
 - 검사 처리과정 각 단계마다 운영자·감독자의 의사결정에 대한 기록 유지
 - 외부압력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여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

❖ 전문성 강화

- 여신상시감시시스템 도입
-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력을 확보 위한 정년보장(tenure) 제도 도입
 - 검사역을 별도 직렬로 분리하고, 현재 4급까지 적용되는 유관기관 취업 제한을 2급 이상 검사역으로 축소 적용
 -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 정년제 도입하여 퇴직 후 유관기관 재취업 유 인 제거

한국금융학회 KMFA 38/62

❖ 책임성 강화

- 주요 의사결정 관련 회의 녹취 및 공개
 - 현행 '금융위원회 운영규칙'에서는 위원들 간 합의로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, 작성한 속기록도 비공개 원칙
 - 속기록 작성 면제 규정을 폐지하고 속기록 작성, 보관,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, 비밀유지 등이 필요할 경우 시차 공개 허용
 - 시차공개를 통해 외부 전문가나 감시단체(watch dog) 사후 평가 유도
- 허위자료 제출 방지 및 자료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조치
 - 금감원 외부에 공동 DB 구축 (미국의 FFIEC 참조)
 - 허위보고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조정하고 처벌 강화
- 공동검사 실시
 - 감독유관기관들간 공동검사 관련 조정이 필요한 경우, 금융안정위원회가 조정토록 함
 - 검사·단속 등 권한이 강한 부분에는 합동·공동검사 의무화 검토

❖ 투명성 제고

- 정보공개
 - 원칙적으로 모든 자료의 전면 공개 적극 추진
 - 정보공개는 사적 규제 기제를 활성화하여 이해관계자 자구행위 능력 강화
 - 금감원 외부에 공동 DB 구축
- 자체 평가보고서 작성 및 국회 보고책임 부여
 - 감독기구는 자체 평가 보고서를 연 1회 작성하여 국회에 보고
- 검사종합관리시스템 확장 및 활용 극대화
 - 제재심의위원회 등 주요 의사결정 회의 내용을 녹취하여 가능한 것은 즉시 공개, 민감 사안은 시차를 두고 공개
- 감독기구의 재량 행위 최소화
 - "~를 할 수 있다"를 "~를 하여야 한다"로 재량 행위 축소
 - 참조: 재량행위 투명화 추진방안 (법제처, 2005.2월)

❖ 시장규율 강화를 위한 사회 인프라 확충

- 금융관련 법규 개정
 -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권 유효기한 연장, 위법처벌기간 시효 확대
 -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: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서 공공기관에 금융기관을 포함시키고, 부패 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 변보호 조치 강화 및 보상금 증액 추진
 - 불공정·불건전 행위 및 감독 실패에 대한 금융소비자 소송 권한 강화
- 「공직자의 청탁 수수 및 사익 추구 금지법」제정 추구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강화

한국금융학회 KMFA 41/62

3. 예산 합리화 방안

❖ 현황 및 문제점

- 현재 감독기구는 정부예산(금융위), 한은 출연금 및 감독 분담금과 수수료 등으로 재원 조달
- 산업포획과 정치권포획을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

❖ 개선 방향

- 수익자 부담 원칙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금융회사의 부담 능력과 실질적 감독 수요을 고려하여 적절한 분담 체계 구축
 공무원 조직 형태의 감독기구 체계에서는 정부 예산 배정 필요
- 공동 DB 구축을 위한 분담금 갹출

- 1. 협조체제 구축의 목적
- 2. 금융안정위원회 설치
- 3. 금융안정위원회의 업무
- 4. 감독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

1. 협조체제 구축의 목적

- ❖ 거시건전성 감독체계의 구축
 - 미시건전성 감독의 경기순응성 통제
 - 업무 성격 필요한 감독유관기관 간 정책공조 및 협력 확보
- ❖ 감독유관기관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
 - 법제화된 협조체계 구축으로 정보 공유 활성화
- ❖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제 구축
 - 시스템리스크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조사·연구
 - SIFI 지정과 관리를 통한 시스템위기 대응 체제 구축
- ❖ 추진방향: 금융안정위원회 신설

- 2. 금융안정위원회 설치
- ❖ 지위: 금융감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
- ❖ 소속 및 법적 형태: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위원회
- ❖ 구성: 5개 감독유관기관의 장 및 6인의 민간위원
 - 기획재정부 장관, 한국은행 총재, 금융건전성감독원장, 금융시장감독원 장, 예금보험공사 사장
 - 민간위원은 국회가 정당별 의석수 반영하여 추천, 대통령이 임명
 - 의장: 기획재정부 장관
 - 부의장: 한국은행 총재
 - 간사: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4개 감독유관기관이 교대로 담당

3. 금융안정위원회의 업무

❖ SIFI 지정 및 감독

- 시스템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금융기관을 SIFI로 지정
-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의 수집·분석을 담당하는 기구로 한국은행 내 부에 금융안정조사국 신설
- SIFI에 대한 건전성감독은 금융건전성감독원이 담당
- 예금보험공사는 SIFI에 비상정리계획(Orderly Liquidation Plan)을 징구하고, SIFI 부실화시 이에 따라 정리

❖ 위기 징후의 포착, 위기 선포 및 대응

- 금융안정 단계별 대응 전략 수립
- 시스템리스크 도래 여부를 감시하고 위기 징후 포착
- 시스템리스크 발생시 위기 판정, 대통령에게 보고 및 위기 대응

- ❖ 감독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체제 구축 및 감독
- ❖ 시스템위기시 감독유관기관에 대한 긴급요구권 행사
 - 한국은행: 필요시 모든 권역 금융기관에 긴급 유동성 지원
 - 기획재정부: 필요시 공적 자금 조성
 - 예금보험공사: 부보 금융기관 및 SIFI에 대한 자금지원 및 필요시 비상 정리계획에 의한 SIFI 정리절차 수행
- ❖ 금융안정 단계별로 한국은행에 조건부 단독조사권과 자금지 원 기관에 대한 감독권 부여
- ❖ 시스템위기시 예금보험공사에게 자금 지원 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권 및 감독권 부여

❖ 한국은행의 금융안정보고서 및 금융건전성감독원의 자체 평가 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시

❖ 내부 운영 규정 제정

- 간사의 배정에 관한 규정
 - 정상시: 기획재정부를 제외한 4개 감독유관기관의 실무진이 교대로 담당
 - 위기시: 기획재정부 실무진이 담당
- 실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
 - 정보 공유, 공동 검사, 법규 제·개정, 위기 관리와 관련하여 감독유관기관 실 무진급 협의회 운영

한국금융학회 KMFA 48/62

금융안정 단계별 각 감독유관기관의 대응

위기 단계	금융 건전성 감독원	금융시장 감독원	한국은행	예금보험 공사	기획 재정부	금융안정 위원회
정상	건전성감독, 검사·제재	검사·제재, 금융소비자 보호	거시건전성 조 사·연구	개별 부보 금융 기관 부실 정리		SIFI 지정· 관리 정보 공유
위기 징후	적기시정조 치	시장 안정 금융소비자 보호	조건부 단독 조 사권	부실(우려) 금 융기관 일제 조 사		위기 징후 판정
위기 대응			긴급 유동성 지 원, 부분 감독 권	자금 지원 적기 시정조치, 감독	공적자금 투입, 긴급 경제조정	위기 판정 감독 기구 권한 조정
사후 관리	부실 관련자 제재		시스템위기 원 인·대책 위원회 보고	정리·회수 부실 관련자 책임추 궁	공적자금 회수· 상환	재발 방지 대책 시행

한국금융학회 KMFA 49/62

4. 감독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

❖ 한국은행

- 거시건전성 감독 관련 한국은행 역할 확대
 - 금융안정조사국을 설치하여, 시스템리스크 관련 정보 수집 및 동향 분석
 - SIFI 지정 관련 기초 연구 수행
- 금융안정 단계별로 추가 기능과 권한 행사
 - 위기 징후 판정시 시스템리스크 도래 가능성 판단을 위해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모든 권역의 금융기관에 대해 조건부 단독 조사권 행사
 - 시스템리스크 도래시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모든 권역 금융기관에 대해 무담보로 긴급 유동성 지원 및 감독권 행사

50/62

❖ 예금보험공사

- 예보의 조직과 지배구조 정비
 - 기획재정부 산하로 이전
 - 예금보험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내부 최고의사결정기구화
- 적기시정조치 권한의 신장
 - 적기시정조치 유예에 대한 이의제기권 부여
 - 부당한 유예에 의해 예금보험기금 손실 확대가 예상될 경우 적기시정조치 단독 발동 권한 부여
 - 시스템위기시 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한 적기시정조치권 및 감독권 부여
- SIFI 부실화에 대한 대응
 - 비상정리계획(Orderly Liquidation Plan) 징구 및 부실 정리

❖ 기획재정부

- 시스템위기의 최종 대응자
 - 시스템위기시 금융안정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공적 자금 조성, 집행 결정
 - 집행 실무는 예보에 위임
 - 공적 자금의 회수 및 상환에 대한 최종 책임
- 시스템위기 극복에 필요한 긴급 경제조정 권한 행사
- 금융안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독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확립 책임
- 금융산업 정책의 입안 및 집행

한국금융학회 KMFA 52/62

VII. 결 론

1. 감독체계 개편의 전제

2. 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

VII. 결 론

1. 감독체계 개편의 전제

- ❖ 건전성 감독 기능의 유효성 제고
 - 정책과 감독의 분리
 - 건전성감독 기능 독점 배제
- ❖ 행위규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
 - 행위규제와 건전성감독의 분리
 -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 별도 설치
- ❖ 시스템위기에 대한 효과적 대응장치 구축
 - 금융감독 유관기관 간 협조체제 구축

VII. 결 론

- 2. 감독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
- ❖ 명시적인 쌍봉형 감독체계 채택
 - 감독의 정책과 집행업무 통합
 - 건전성감독기구와 행위규제기구의 분리
- ❖ 미시건전성 감독 강화를 위한 금융건전성감독원 신설
- ❖ 시장 안정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시장감독원 신설
- ❖ 금융안정위원회의 신설
 - 감독유관기관간 협력체제 구축 및 시스템위기 대처
- ❖ 감독유관기관의 역할 재정립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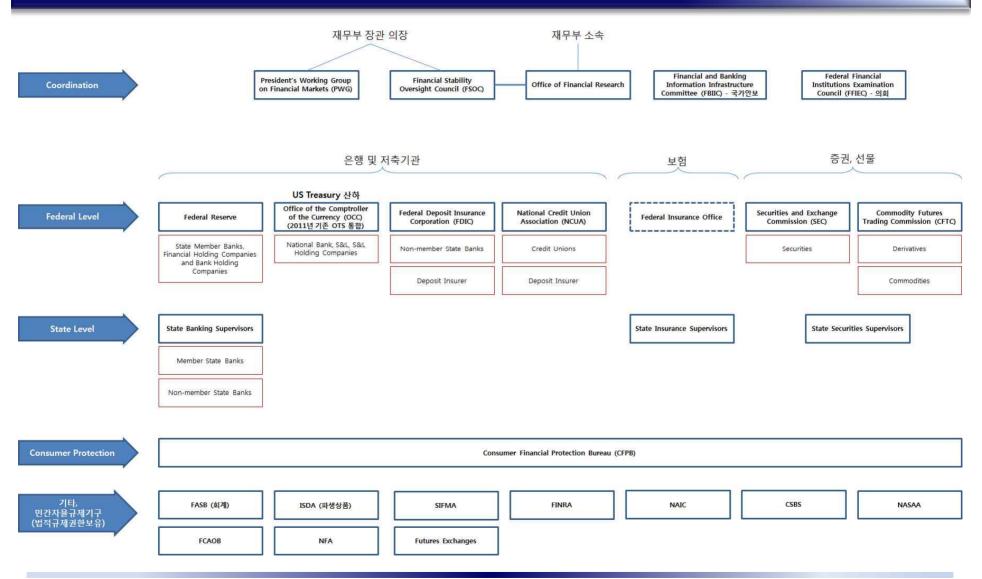
한국금융학회 KMFA 56/62

부 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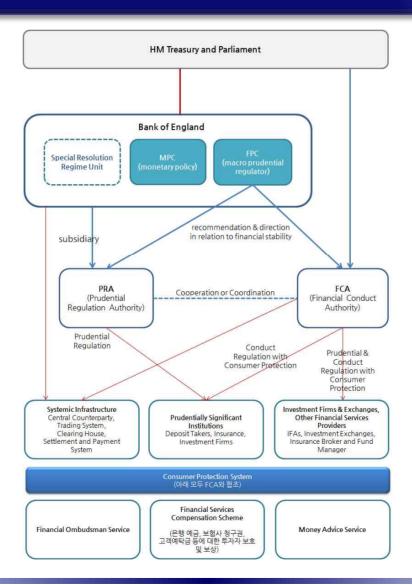
주요국 금융감독체계

- 1. 미국
- 2. 영국
- 3. 호주
- 4. 뉴질랜드
- 5. 프랑스

주요국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- 미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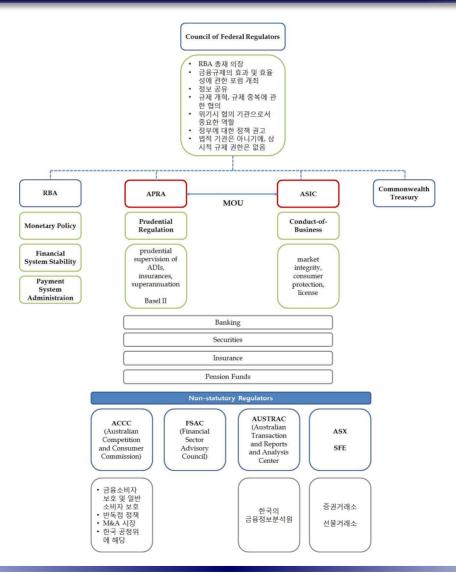


주요국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- 영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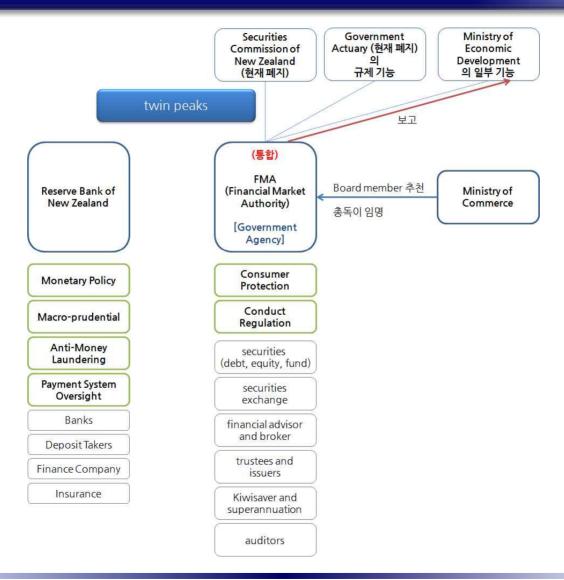
한국금융학회 KMFA 59/62

주요국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- 호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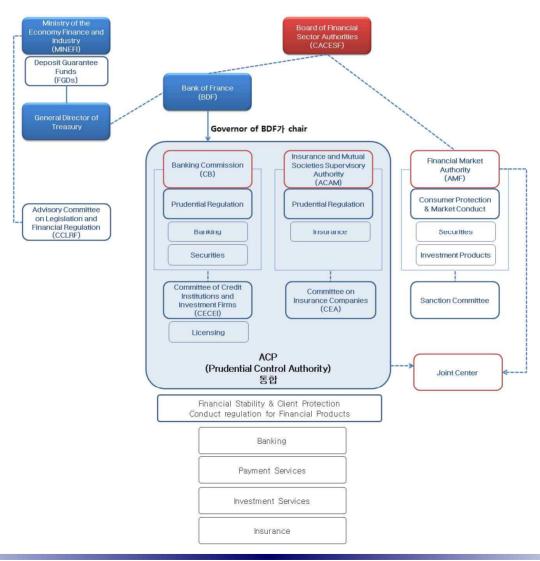


한국금융학회 KMFA 60/62

주요국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- 뉴질랜드



주요국별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용 - 프랑스



한국금융학회 KMFA 62/62